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88
------------	-------

발의연월일 : 2017. 11. 16

발의자 : 한정애 · 김영진 · 강병원

신창현 · 송옥주 · 이학영

윤관석 · 민홍철 · 이찬열

윤호중 의원(10인)

제안이유

환경오염, 무분별한 남획, 서식지파괴 및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의 멸종 가속화 및 생물다양성이 감소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도 멸종 위기 야생생물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멸종위기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한편, 한반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복원·관리로 생물종의 다양성과 국가생물자원 주권 확보를 위한 거점인프라로서 국가전문연구기관인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준공('17.7월)되었음.

이에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설치하고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립생태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증식 및 복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1호).
-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멸종위기 종복원센터를 국립생태원에 설치하고 그 기능을 정함(안 제5조의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 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중식 및 복원에 관한 사업

제5조제1항제14호(종전의 제13호)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치)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하 “복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복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 · 시행
2. 중식 · 복원 기술개발 및 실용화 ·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성과분석 · 평가
4.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시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 · 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복원센터는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의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3조(예산안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복원센터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복원센터 예산서는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이 작성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업) ① 국립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10. (생 략)</p> <p><u><신 설></u></p> <p><u>11. · 12. (생 략)</u></p> <p><u>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u></p> <p><u>14. (생 략)</u></p> <p><u>② (생 략)</u></p> <p><u><신 설></u></p>	<p>제5조(사업) ① -----.</p> <p>1. ~ 10. (현행과 같음)</p> <p><u>1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증식 및 복원에 관한 사업</u></p> <p><u>12. · 13.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u></p> <p><u>14. ----- 제13호-----</u></p> <p><u>15. (현행 제14호와 같음)</u></p> <p><u>② (현행과 같음)</u></p> <p>제5조의2(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치) ① <u>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하 “복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u>② 복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u></p> <p><u>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시행</u></p> <p><u>2. 증식·복원 기술개발 및 실용화·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u></p>

업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성과분석 · 평가

4.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시 · 교

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